

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교육위원회 고시 제5호(1987. 2. 17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442호(2007. 12. 06.)로 건축범위 일괄결정된 아현중학교 및 아현산업정보학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 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4년 9월 5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

가. 결정(변경) 취지

- 다목적강당과 도서관(6~7층예정) 시설의 확충 및 실습실과 일반교실의 증설을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결정(변경)하고자 함.

나.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

-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학교	중교	마포구 아현동 267-1	28,569.3	-	28,569.3	서울시 교육위원회 고시 제5호 (1987.2.17.)	

○ 건축물의 범위 결정조서(변경)

건폐율		용적률		높이		비고
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30%이하	30%이하	120%이하	120%이하	5층 이하	7층 이하	제2종 일반 주거지역(7층이하)

○ 건축물의 범위 변경결정 사유서

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	비고
학교	건축물의 높이(층) 변경 [5층→7층]	· 시설의 노후화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목적강당과 도서관 시설의 확충 및 실습실과 일반교실의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변경 결정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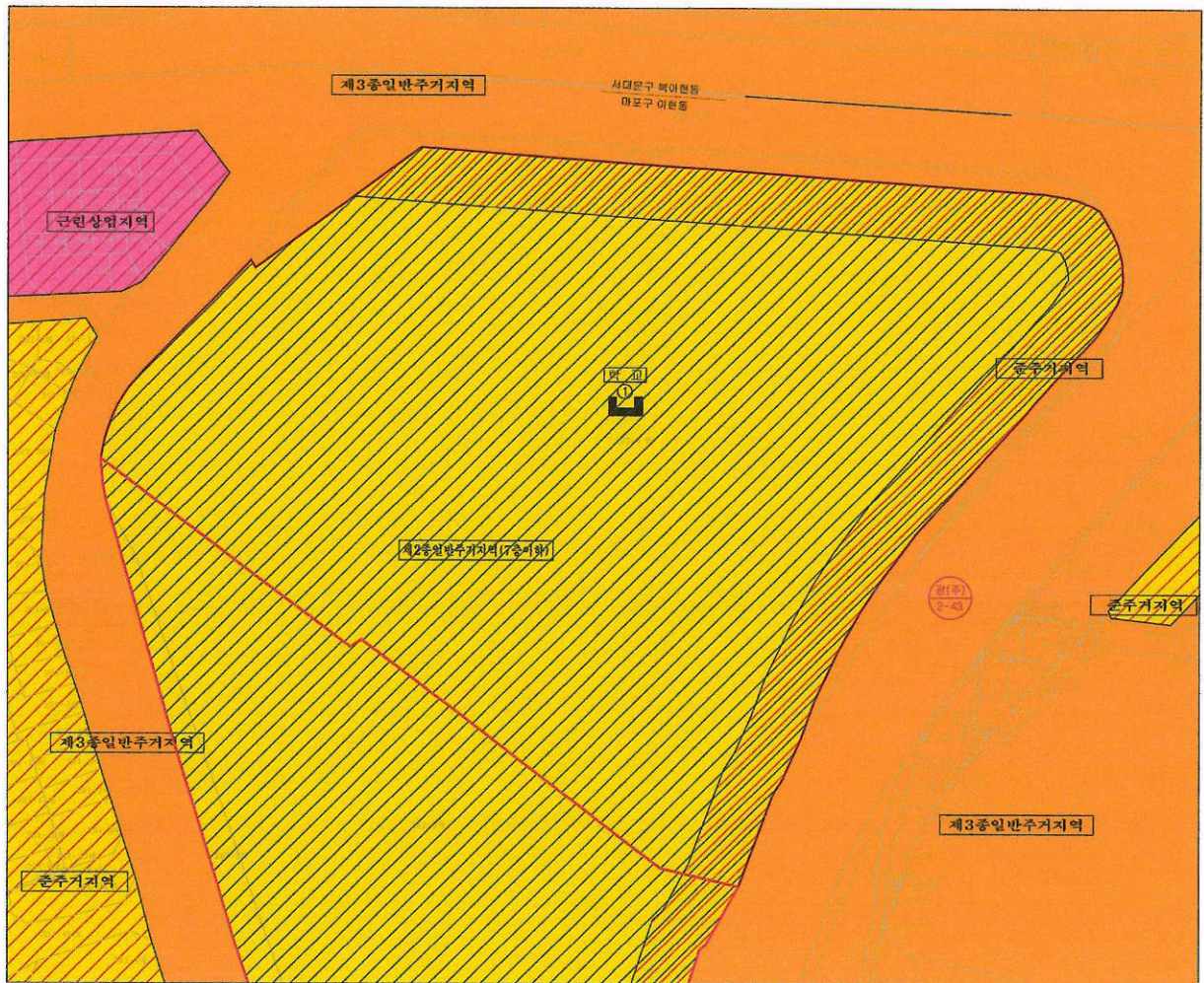
다. 지형도면 : 붙임 참조

※ 붙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

라.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마포구청 도시계획과(☎02-3153-9357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(<http://urban.seoul.go.kr>) 및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





■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도(변경없음)



아현중학교
도시관리계획(시설:학교)
결정(변경)

도시관리계획(시설:학교)
결정도(변경없음)

범례

-  지적선
-  결정 고시선
- 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
-  제3종일반주거지역
-  근린상업지역
-  준주거지역

축척 = 1 : 1,000

